

아이돌봄서비스 안전관리 매뉴얼

2021. 2.



차 례

I.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관련 법령	1
1. 산업안전보건법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II. 아이돌보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방안	7
1. 유해·위험요인	7
2.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안	15
III. 돌봄아동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34
1. 돌봄아동 안전사고 예방관리	34
2. 돌봄아동 감염병 예방관리	45
IV. 산업재해 처리 절차	66
1. 산업재해란?	66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 주 조치	67
3. 산재보상급여 종류 및 신청	70
4. 산재보상에 불복 시 이의신청	76
5. 타 손해배상과의 관계	77
6. 산재발생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78
7. 산재휴직자의 급여 및 복직(연차 유급휴가 등)	79
붙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서약서	81

I.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아이돌보미'가 속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제1항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 의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임. 적용 제외 규정은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및 제5장 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임.

- 아이돌보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아이돌보미의 직업건강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표 I-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항목(법령)	주요내용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34조 법령요지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제36조 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를 하여야 함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제38조 안전조치	기계, 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제39조 보건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관리대상물질)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제41조 고객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제57조 산재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 보고하여야 함
제77조 특고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보고하여야 함
제129,130조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제138조(규칙) 질병자 근로금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 아이돌보미는 아래 <표 I-2>의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표 I-2>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 대상

종 류	대 상
일반건강진단	전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건강장애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받은 근로자

나. 보호자 및 아동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법 제41조)

- 아이돌보미는 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하는 사례 확인, 아동 및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면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 실시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아이돌보미도 보호자와 아동을 응대하는 근로자로서 위 법에 준하여 아이돌보미가 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에 대해 적용 가능한 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보호자 및 아동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안내문 배포
 - 이용자와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이용자 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 I-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보건조치

법조항	내 용
법 제41조제1항(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 교육 실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 산업재해 발생 시

-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목격자 진술서 첨부하여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
- 회사에 각 1부 보관
-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요양승인서를 근로자, 병원, 회사에 송부
- 병원에서 요양비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 요양연기 시

-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 신청서에 상병 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로 제출. 단, 요양연기신청서 제출은 이미 승인된 요양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요양연기 승인사항을 의료기관에 송부

□ 휴업 시

- 휴업급여 신청서 3부 작성, 근로계약서 1부, 출근전표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요양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휴업기간란을 작성하고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회사에 각 1부 보관
-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휴업급여 지급

□ 장애 시

- 장애보상 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요양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장애정도란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사업장에 각 1부 보관
-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장애보상금 지급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의 사고

- 포괄적 돌봄활동 수행 중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가정 내 가구, 실내용이기구 등과 실외놀이 시설 등의 돌봄활동과 관련된 시설의 결함에 의한 사고

행사 중의 사고

- 돌봄아동 동반 참여 행사 등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돌봄아동과 동반 이동 등에서 일어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 산재 요양 중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보호자 등 이용자 관련 인물에 의한 사고
- (예) 보호자의 위협에 의한 추락사고 등

업무상 질병

- 돌봄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등

출퇴근 중의 사고

- 돌봄활동 장소 이동 시, 출퇴근 시 사고

II. 아이돌보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방안

1. 유해·위험요인

가. 작업환경 요인

1) 실내 환경오염¹⁾

-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오염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그 원인은 아래의 <표 1-4>와 같음
- 아이돌보미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장시간 생활을 하게 됨. 실내에서는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함에 따라 알레르기질환의 원인 물질인 집먼지진드기, 바퀴 및 곰팡이류의 실내 생존 및 번식이 늘어남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또한 가구 및 실내 건축자재에서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실내 환경 오염 가능
-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은 발병 및 진행 단계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표 II-1> 실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과 그 원인물질

유발 질환	원 인
천식, 알레르기비염, 과민성 폐장염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바퀴 등 흡입 알레르겐
유해물질 중독	CO 가스, 유기용제
악성종양	흡연, 라돈, 석면
상기도 감염, 결핵	바이러스, 세균
기도 자극	NO ₂ 오존, SO ₂ , 난방기 배출가스
빌딩 증후군	전자파를 비롯한 복합요인

1) 박종원.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검진조사분야) 기반의 가정 실내환경 및 알레르기질환 조사 모형 개발. 질병관리본부

〈표 II-2〉 실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과 그 원인물질

천식	아토피 피부염
숙주요인 유전적 요인 / 비만, 성별, 연령	숙주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알레르진(실내 / 실외) 감염, 음식 흡연 실외 / 실내 환경오염 직업성 감작물질	환경적 요인 알레르진(실내 / 실외) 감염, 음식 흡연 실외 / 실내 환경오염 직업성 감작물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주 발생원은 다음과 같음

- 미세먼지(PM10)는 주로 아이돌보미와 아이들의 신체활동으로 발생
- 이산화탄소(CO2)는 주로 실내에서 아이와 아이돌보미의 호흡에서 발생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와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 가구류 및 교육용품에서 주로 발생
- 부유세균은 재실자의 호흡과 음식물 조리 및 섭취 등 미생물 성장에 유리한 온도, 습도, 영양분이 충족되는 조건(청소 및 유지관리 미흡)에서 발생
- 충분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CO2, PM10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휘발성이 강하여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VOC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부유세균의 농도는 여름철에 높게 조사됨

〈표 II-3〉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CO2	재실자(학생, 시설종사자)의 호흡
PM10	재실자의 신체활동
VOC	건축자재, 가구류, 교육용품
포름알데히드	건축자재, 가구류, 교육용품
부유세균	재실자의 호흡, 음식물 조리 및 섭취 등 미생물 성장에 유리한 온도, 습도, 영양분이 충족되는 조건

겨울철 : CO2, PM10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음(환기 부족)

여름철 : VOC, 부유세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음(휘발성, 온도, 습도 영향)

자료 : 최유진 외. 2014. 서울시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연구 : 어린이집과 경로당 중심으로

2) 실외 공기질(황사, 미세먼지 등)²⁾

- 아이돌보미는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미의 가정 내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방과 학습지도와 더불어 실외에서의 돌봄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실외 활동 시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의 실외공기에 노출되며, 이는 다양한 호흡기질환의 발생과 관련됨

□ 황사³⁾

-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날아오는 먼지 현상으로, 황사 먼지 크기는 다양한 분포를 이루지만 3~10 μ m 사이의 크기가 가장 많아 콧속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호흡기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허파파리 침입이 가능
-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의 악화,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어 기침, 가래, 목아픔 등의 기관지염의 증상과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이 차고 숨 쉴때마다 쉼쉼거리는 소리가 나는 천식증상과 알레르기성 비염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미세먼지

- 미세먼지는 다양한 크기, 구성, 그리고 발생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공기중의 총 부유분진 중 보통 직경 10 μ m이하의 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μ m in diameter, PM20)를 의미
- 미세먼지는 기도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정상인에게서도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며, 천식과 같은 만성 알레르기질환에서는 단기간의 노출만으로도 급성 기도 염증과 기관지수축을 유발하여 천식을 악화시키고, 노출량에 따라 입원 위험도가 증가

3) 감염성 질환

- 대면·접촉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특성 상 코로나19 등 감염성질환 위험에 노출됨
- 아이나 부모, 아이돌보미가 무증상 상태로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질병 여부를 확진 받지 못한 경우 서로 감염시킬 수 있음

2) 경선영, 김영삼, 김우진, 박무석, 송진우, 염호기, ... & 정성환. (2015).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권고지침 : 호흡기질환.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Taehan Uisa Hyophoe Chi, 58(11).

3) 권호장. (2012). 황사와 환경성질환. 대한의사협회지, 55(3), 234~242.

- 여러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상 감염병 발병 시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나. 작업조건 요인

1) 직무스트레스

-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돌보는 일 외에도 돌봄과 관련된 간단한 정리정돈 및 밥먹이기 등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를 병행해야 함
 - 돌봄의 특성상 아동의 행동에 주의집중 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늘 유의하여야 함. 아동 돌봄과 관련된 정리정돈, 주방일을 병행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 원인이될 수 있음
- 직무스트레스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말함
- 아이돌보미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휴식 시간 부족, 가정 내 CCTV 상시노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이에게 항상 집중해야 하고, 아이와 부모 등 고객응대업무를 하면서 겪는 감정노동 등임

〈표 II-4〉 아이돌보미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요 인	설 명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식 • 식사 시간이 별도로 없으며, 아동의 식사 보조 중간에 식사 해결 • 가정 내 CCTV 상시노출
직무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아동의 요구를 즉각 파악하고 해결해야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늘 주의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아동을 돌보는 업무 외에도 아동 돌봄과 관련된 청소 및 주방일, 세탁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
고객응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아이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무례한 부모의 언행에 감정적 소진 경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음

2) 돌봄아동 응대업무

- 아이돌보미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끊임 없이 즉각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됨
- 아이돌보미는 근무를 하면서 부모를 상대하게 되고,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리한 요구에 따른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됨
- 감정노동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다음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겉으로 웃으면서 마음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가면(假面)우울증
 - 내가 남이 된 것 같은 이인화(異人化) 현상
 - 내가 못나서 이런 데서 일한다는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존중감이 사라짐
 - 감정적 불감증
 -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풀지 못해 나타나는 화병에 시달림
- 감정노동 종사자는 근무시간 동안 고객(아이돌보미의 경우, 돌봄아동, 드물게 보호자도 포함됨) 응대를 위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함.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직무스트레스의 건강영향으로 알려져 있는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
 - 직무관련 : 직무만족도 저하, 조직몰입도 저하, 이직 의도 증가
 - 정신건강 : 우울, 자살 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건강행위 : 흡연, 음주
 - 신체건강 : 심혈관질환, 암, 근골격계질환

3) 언어적, 신체적 폭력

- 가정 내 CCTV 설치로 인해 업무 감시 등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받는 상황 발생
- 아이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에게 반말 혹은 욕설,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폭력 경험 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사과해야 하는 경우 발생

다. 건강문제 요인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 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함.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무리한 힘의 사용, 불편한 자세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손목/손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어 근무해야 하므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됨. 아이들을 돌보며 기저귀 교환, 수유, 안기, 업기 등의 자세를 자주 취함.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해 주로 발생 가능한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요통, 골관절염 등이 있음
- 아동을 안거나 들어 올리는 행동이 빈번하고 아동과의 놀이, 식사, 간식 챙기기, 안전보호 등의 신체활동으로 인해 손목과 허리, 무릎에 무리가 많아 근골격계 문제가 나타남(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 2016 : 81)
- 또한 아이돌보미 여성의 대다수가 중년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더 쉽게 유발하고 중증으로 이환 될 위험이 큼
- 근골격계질환의 특징
 -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옴
 - 직업적인 원인 외에 개인적 요인과 연령 증가, 취미생활 등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증상이 가벼운 것부터 심한 증상, 간헐적이거나 만성적인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재발도 잦함
 - 방사선검사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
 - 구조적 요인
 - 근무강도, 작업내용, 생산방식, 사회경제적 변화 등

○ 작업관련 요인

- 작업자세, 힘, 반복성 등 물리적 요인
 - 빠른 속도의 작업,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
 -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에 접촉하는 작업
 -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작업

○ 개인적 요인

- 성별, 연령, 병력, 체중 등
- 운동, 취미생활, 생활습관 등

□ 근골격계질환의 발전단계

[그림 II-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동안 통증 및 피로감 • 하룻밤 지나 아침이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저하 없음 •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룻밤지나도 통증 지속 • 화끈거림, 통증으로 불면 • 작업능력 저하 •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종일 통증 •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 다른 일에도 어려움과 통증동반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종류(Sheet형 교재)

2) 위장 질환

□ 아이돌보미는 영유아 및 아동의 식사 보조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아이와 함께 밥을 먹거나 짧은 시간에 급하게 식사를 함

- 아이돌보미는 식사 시간 중에 주의 부족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안전사고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사를 빠른 시간 안에 하거나 거르는 등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며, 이러한 위장 질환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3) 만성 피로 증후군

- 아이돌보미는 과도한 업무량, 업무 중 불충분한 휴식 시간 등으로 인해 만성피로를 경험함.
- ‘피로’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활동 이후의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로 정의됨
- ‘피로’가 1개월 이상 계속 되는 경우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피로’라 부름. 만성피로증후군은 잠깐의 휴식으로 회복되는 일과성 피로와 달리,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음
-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표 II-5〉 만성피로증후군 판단기준

주요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적으로 평가되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남 •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님 •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 만성 피로 때문에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소함 	
주요증상 외 다음 항목 중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력 혹은 집중력 장애 • 인후통 • 경부 혹은 액와부 림프선 압통 • 다발성 관절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두통 •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음 • 운동 혹은 힘들여 일을 하고 난 후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위의 증상들이 아래 나열되는 질환에 의한 것이면 만성피로증후군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현재 증상의 모든 기질적 질환 :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각종 만성질환,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수면무호흡증, 기면발작, 약물부작용 등 • 과거에 진단되었지만 회복이 증명되지 않았고 지속되었을 때 만성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질적 질환 • 정신과적인 주요 우울증, 양극성 정동성 장애, 조현병(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치매, 신경성 식욕 부진, 대식증 • 만성 피로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그 이후에 생긴 알코올 혹은 기타 약물 남용 • 심한 비만(체질량 지수 45 이상)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

라. 사고관련 요인

1) 넘어짐

- 아이를 돌보며 급히 움직이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골절 등이 발생함

발생사례

- 청소나 세탁, 설거지를 할 때 부주의로 미끄러짐
- 아동용품 등을 가져오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음

2) 화상

- 아이가 먹을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음

3) 교통사고

-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정방문 시 시간을 맞춰가려고 서두르는 중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

2.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안

가. 작업환경 관리

1) 가정 실내환경 관리

습도

- 적정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 사용과 관리
 - 평상시 습도는 50~60%로 유지하고 가습기 물을 매일 갈고 청소
 - 아동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습도 상향 조정하고 후두염인 경우 습도를 100%로 함

환기

- 창문의 크기와 위치가 적절한 가정은 적극적 자연환기를 실천하고, 자연환기로는 충분한 환기량 확보가 어려운 가정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이 쉽기 때문에 유용하게 실내 공기질을 적합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실내 공기오염물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2) 실외공기질⁴⁾

- 아이돌보미는 실외에서의 돌봄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의 실외공기에 노출되며, 이는 다양한 호흡기질환의 발생과 관련

-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을 시행함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www.airkorea.or.kr)를 통해 미세먼지 현황 확인하기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일 경우는 물론이며, '보통' 일지라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주의해야 함
 -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을 할 경우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사용하기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두통 등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벗기
 -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기(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시행)
 -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3) 감염성 질환

- 감염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 장구(장갑, 마스크 등) 착용 의무화 등
 - 전국적인 감염병 유행 시 아이와 아이돌보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용품 지급
 - 하루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매 가정마다 앞치마를 교체하고 가급적 복장도 환복하도록 함

-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 제공기관 차원의 지침 마련 및 적용
 - 감염병 유행 시 아이돌보미 개인이 상황을 판단하여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공기관이 가정 방문 여부나 돌봄 업무 진행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 지침 내용
 - 제공기관 내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관리책임자의 지정, 아이돌보미 및 방문 가정에서의 접촉자 등의 목록 작성 등

4) 경선영, 김영삼, 김우진, 박무석, 송진우, 염호기, & 정성환. (2015).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권고지침 : 호흡기 질환.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Taehan Uisa Hyophoe Chi, 58(11).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의심증상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하여 병원, 보건소 및 진료소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감염 확산 시 대응체계의 구축 : 감염 의심 종사자의 접촉자 파악 및 필요 시 격리 조치 실시, 필요한 경우 방역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공기관 내 방역 실시, 감염병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접촉 제한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차원의 지원 실시 등

□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사항

- 예방접종 유무 확인 및 제안
- 전염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 확인
 - 질병과 관련된 증상 유무 :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확인
 - 질병에 감염된 영유아가 어디에서 감염 되었는지 확인
 - 감염된 영유아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
- 예방 교육
 - 감염병 예방(손 씻기, 기침 및 재채기 시 입을 가리고 할 것 등)에 관한 정보를 포스터나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알림
 - 영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 등 모든 물품에 대한 청결 유지 교육
 - 아이돌보미에게 감염성 질환의 증상, 치료, 예방법 등을 교육

□ 감염성 질환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감염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질병 발생, 위험요인 및 예방책, 조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아이 또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발열 등 감염성 질환 의심증상 또는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
- 아이돌보미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질환의 검사를 신속히 시행
- 감염이 확인되면 아이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 분리 조치 및 담당자 교체

□ 호흡기 감염 질환 예방관리(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인플루엔자 등)

-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사항
 -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도록 함
 -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피하도록 함
 - 2세 이상 어린이 마스크 착용 :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림
 - 가정 공용 공간(테이블, 등받이가 딱딱한 의자, 문손잡이, 전등 스위치, 리모컨, 손잡이, 책상, 화장실, 싱크대)에서 많이 만지는 곳을 청소하고 소독
 - 필요하면 빨 수 있는 봉제완구 등을 세탁
- 아이돌보미 건강유지를 위한 사항
 - 아이돌보미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 (예 : 도보, 자전거, 자가용 운전 또는 가족 동승 차량)을 이용
- 영유아 및 아동의 씻기기, 먹이기, 안기
 - 손, 목 또는 어린이의 분비물이 닿은 모든 부위를 씻어야 함
 - 옷에 분비물이 묻은 경우, 옷을 갈아입혀야 함(단추를 채우는 셔츠에 분비물이 묻은 경우 이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다시 씻어야 함)
 - 오염된 옷은 비닐 봉투에 넣거나 세탁기로 세탁
 - 영유아와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들은 갈아입을 옷을 여러 벌 준비
 - 아이돌보미는 젖병을 만지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분유를 먹이는 데 사용한 젖병과 뚜껑, 젖꼭지 및 기타 용품들은 매번 사용 후 식기 세척기나 병솔, 비누, 물을 사용해서 세척
- 건강한 손 위생 실천
 - 손 위생 실천 시
 - 이용자 가정 도착 시 그리고 휴식 시간 후
 - 음식이나 음료를 준비하기 전과 후
 - 음식을 먹거나 취급하거나, 어린이에게 먹이기 전과 후
 - 약을 주거나 연고를 바르기 전과 후
 - 기저귀 갈기 전후
 -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의 화장실 사용을 도운 후
 - 체액과 접촉한 후
 - 동물을 만지거나 동물의 배설물을 치운 후

- 실외 또는 모래에서 놀이를 한 후
 - 쓰레기를 처리한 후
 -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씻도록 함.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더럽지 않다면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최소 60%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
 -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삼키지 않도록 주의
 - 혼자서 손을 씻을 수 없는 유아를 포함해, 어린이의 손 씻기를 도와줌
- 음식물 준비 및 식사 제공
- 음식물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싱크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아이돌보미는 어린이가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직후에 손을 씻도록 지도
 - 아이돌보미는 음식물을 준비하기 전과 어린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와준 후 자신의 손을 씻도록 함.

[그림 II-2] 올바른 손씻기 요령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올바른 손씻기 스티커.

나. 작업조건 관리

1) 적정 근로 시간 관리

□ 초과근무시간 최소화

- 아이를 돌보는 업무 외의 정리정돈, 음식준비 및 정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는 최소화함
-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의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함
- 아이돌보미의 초과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및 업무량 감소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조직적 관리방안

- 주 52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돌봄활동은 최소화함
- 가능하면 돌봄활동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최소 6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무일정을 수립
- 비정기적인 근무일정으로 수면부족과 피로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비정기적인 근무 일정은 피함
- 업무량과 업무 일정 등에 대해 아이돌보미의 의견 수렴
-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근무상황, 피로의 축적 정도, 정신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 지도
-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문제 수시 확인 후 지도 및 개선
- 극심한 육체적 피로, 정신적 불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함

□ 개인적 관리방안

- 돌봄활동으로 인한 피로와 저하된 신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함
-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카페인과 술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함
- 정기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피로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

2) 직무스트레스 관리

□ 조직적 관리방안

-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자가 서비스이용자에게 아이돌보미의 고충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체계마련
-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종사자 교육 실시
- 근무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듣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지지를 제공
- 다른 아이돌보미와의 공감의 시간을 주선하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공유하도록 함. 이를 통해 서로 지지체계를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함
- 아이돌보미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개인적 관리방안

-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눔
- 영유아 및 보호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 규칙적 운동
 - 올바른 식습관 유지
 - 하루 7~8시간의 쾌적한 수면시간 유지
 - 카페인 많이 든 음식 섭취 감소

□ 직무스트레스 증상 완화 및 요인별 관리방안

- 직무 스트레스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은 <표 II-9>와 같음
 - 스트레스 원인을 알기 위한 자기 심리나 활동 내용 관찰
 -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복식호흡 연습하기
 - 긴장 해소를 위한 근육 이완 훈련하기
 - 스트레스 발생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스트레스나 화가 있을 때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자기 주장 훈련

<표 II-6> 직무스트레스 증상완화법

대 처 법	내 용
자기 관찰	원인이 된 스트레스를 알아내기 위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양상을 일일 행동기록지에 적기
복식호흡법	양손을 아랫배에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코나 목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이용해 숨을 쉽)
근육이완법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는 단계적인 훈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쩔 수 없이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도록 긍정적인 생각 갖기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화가 났을 때 마음에 쌓아 두지 않고,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해서 자기감정을 표출
자기 주장훈련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명확히 주장하는 방법을 훈련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근로자 자살예방 직업건강가이드

-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관리 방안은 <표 II-10>과 같음
 - 근무환경 : 가정내 위험요소나 CCTV 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자가 이용자 가정과 아이돌보미간 의견 조정 등 지원함
 - 직무요구 : 돌봄 업무와 아동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돌보미 교육 실시, 아이돌봄 업무 기준 관련 이용자 가정에 대한 협조 요청
 - 이용자 응대 : 돌봄아동과 보호자 관계에서 문제 발생시 대처 방법 등 응대 매뉴얼 마련

〈표 II-7〉 아이돌보미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관리방안

요인	설명	관리 방안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놀이 등 돌봄내용 다양, 돌봄 시간 내내 긴장 • 위험한 가구 등 가정내 위험요소 상존 • 가정 내 CCTV 상시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위험 요소관련 이용자 가정과 아이돌보미간 조정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원 • 가정 내 CCTV 관련, 이용자 가정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지침 등 마련
직무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아동의 요구를 즉각 파악하고 해결해야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늘 주의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기본 돌봄활동 업무 이외에 이용자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추가 업무 발생 (돌봄아동이외 다른 형제 돌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업무, 가정 내 아이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해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 • 이용자들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안내함
이용자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아이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무례한 부모의 언행에 감정적 소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나 그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보호자와 아동 응대업무 관리

- 제공기관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의 안전 및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등을 기관 내에 설치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아이돌보미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관이 아이돌보미를 보호할 것임을 기관의 규정 또는 운영방침 등에 명시
 -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아이 보호자 또는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교육
- 제공기관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고객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또는 관리자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아이돌보미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휴식 기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붙임)’에 따라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격존중 의무가 있고, 폭언 등은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통지

- 고객과 아이돌보미 사이에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을 알림판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수시 안내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

■ 이용자

1.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 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 아이돌보미

1.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봅니다.
2. 아이의 건강상태, 놀이상황 등 상시적으로 안전을 살피며, 돌봄 중에 개인용무를 보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습니다.
4. 이용자와 약속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지킵니다.
5.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아이돌보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호 매뉴얼을 작성하고 게시, 교육

건강보호 매뉴얼에 포함할 내용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 아이돌보미 건강보호 매뉴얼의 목적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 업무 주요 이슈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 업무를 관리해야 할 근거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 업무 종사자 건강보호에 대한 경영방침 제시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 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적용범위
- 문제유발 이용자의 유형 분류
- 상황별 응대 멘트
- 폭언, 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시 아이돌보미의 권리 보장
- 제공기관 내 지원체계
- 아동 및 보호자 등 응대업무로 인한 감정손상 예방 대책
- 도움 요청기관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8.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맞게 재구성함

-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가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완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표 II-11>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평가도구이며,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을 평가할 때 활용 가능함
-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에 대한 평가는 <표 II-12>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기준치와 비교하여 정상치 여부 판정 가능

〈표 II-8〉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2. 고객을 대할 때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1	2	3	4
3. 업무상 고객을 대하는 과정에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숨긴다.	1	2	3	4
4.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2	3	4
5.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나의 감정과 내가 실제 표현하는 감정은 다르다.	1	2	3	4
6.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	1	2	3	4
7. 나의 능력이나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	1	2	3	4
8. 고객의 부당하거나 막무가내의 요구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1	2	3	4
9. 고객을 응대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1	2	3	4
10. 고객에게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못할 때 나는 감정이 상한다.	1	2	3	4
11. 고객을 응대할 때 나의 감정이 상품처럼 느껴진다.	1	2	3	4
12. 퇴근 후에도 고객을 응대할 때 힘들었던 감정이 남아 있다.	1	2	3	4
13. 고객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1	2	3	4
14. 몸이 피곤해도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힘들다.	1	2	3	4
15.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고객에게 잘 응대하는지 감시를 당한다(CCTV 등).	1	2	3	4
16. 고객의 평가가 업무성과평가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준다.	1	2	3	4
17. 고객 응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직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1	2	3	4
18.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4	3	2	1
19.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직장 내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가 있다	4	3	2	1
20. 직장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게 해준다.	4	3	2	1
21. 상사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준다.	4	3	2	1
22. 동료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준다.	4	3	2	1
23. 직장 내에 고객 응대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설명서, 안내서)이 마련되어 있다.	4	3	2	1
24. 고객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자율성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4	3	2	1

주 : 1) 문항번호 1-5 : 감정조절의 노력 및 다양성
 문항번호 6-8 :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문항번호 9-14 : 감정부조화 및 손상
 문항번호 15-17 :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문항번호 18-24 :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2) 영역별 환산점수 = (해당 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진 점수의 합-문항개수)/(해당 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문항개수)×100

〈표 II-9〉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의 요인별 성별 참고치

감정노동 하부 요인		정상	주의
감정조절의 노력 및 다양성	남자	0~76.66	76.67~100
	여자	0~83.32	83.33~100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남자	0~61.10	61.11~100
	여자	0~61.10	61.11~100
감정부조화 및 손상	남자	0~58.32	58.33~100
	여자	0~58.32	58.33~100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남자	0~38.88	38.88~100
	여자	0~38.88	38.88~100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남자	0~45.23	45.24~100
	여자	0~45.23	45.24~100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

□ 개인적인 차원의 관리법

- 아이돌보미는 아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였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즉각 알리고 그 자리를 피함
- 이용자의 폭언 등 감정노동 문제는 제공기관의 지원으로 공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감정의 상처나 스트레스는 개인적 관리가 필요함
- 개인적 감정 관리법은 아래 〈표 II-13〉, 〈표 II-14〉와 같이 명상법, 호흡법, 동료와 수다, 심리상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감정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

〈표 II-10〉 감정의 자기조절법

방 법	내 용
스트레스 자각하기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왜 일어나는지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는 것
노여움 발산하기	화가 났을 때 산책하거나, 베개를 발로 차거나,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하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상대방 말을 듣기	화가 나는 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당한 분노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 보는 것
긍정적 태도 갖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도록 긍정적인 태도 갖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동료와의 하심탄회한 관계,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낮추기
창조적 에너지 쓰기	창조성이 요구되는 작업(노래, 춤, 요리 등)을 골라 꾸준히 하기
주변 환경변화	주변환경(가구배치, 주방정리)을 바꿔 기분전환 하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여유 있게 스케줄 짜기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나 우선순위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기
거절할 줄 알기	자신이 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안 된다고 거절하여 과도한 부담에 시달리지 않기
체념할 줄 알기	바꾸기 힘든 어려운 환경은 빨리 체념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좌절감에 휩싸여 있지 말고 다른 목표를 세우기
겸허히 받아들이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서슴없이 적절한 상대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 청하기

자료 : 선종욱 외. 2010.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II-11〉 감정노동의 개인적 관리방법

방 법	내 용
적응하기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하며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
일과 나와의 분리	‘일 때문에 생긴 일이야.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야’하며 자신과 업무를 분리하여 생각
스스로 격려하기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기 암시나 혼잣말 하기
분노 조절 훈련	심호흡, 자극 피하기, 관심 바꾸기, 용서를 통한 해소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
생각 멈추기	‘그만’하며 생각을 멈추거나 긍정적으로 생각

자료 : 정혜선 외. 2012.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4) 신체적, 언어적 폭력 예방

□ 조직적 관리

- 이용자 가정에서 폭력 발생 시 이용 제한 등의 제재
- 아이돌보미의 폭력 예방을 위하여 비폭력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응대기술 등 대처방안 강구
- 신속하게 폭력사건을 보고하고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도록 조치

□ 폭력 예방교육 내용

- 직장 폭력 예방 정책 및 폭력 유발 위험요인 파악
- 공격 등 폭력행동 및 상황에 따른 빠른 인지방법
- 폭력상황 또는 공격적 행동, 분노를 누그러트리게 하는 방법
- 비상경보 및 연락체계 수립 및 신속한 연락 방법
- 공격적인 사람과 폭력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 폭력사건을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폭력 사건과 손상 후 근로자의 보상 및 법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문제 관리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관리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유해요인 개선대책 등

□ 의학적 및 관리적 대책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작업환경개선 활동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근골격계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복귀를 위한 의학적 관리 수행
- 아이돌보미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구축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 등 실시

□ 스트레칭

- 신체 부담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시작 전, 중, 후 스트레칭을 실시

[그림 II-3] 실내 스트레칭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1).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2011-교육미디어-936).

□ 아이나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 어린이를 안아 올릴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몸을 밀착한 후, 허리가 아닌 다리 힘으로 안아 올림
- 중량물은 무리한 인력 취급 및 운반을 지양하고 보조 운반 기구를 활용

2) 위장질환

- 위장질환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도록 하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통해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중년 이후에는 증세가 없더라도 1~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장함
-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질병 발생 시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함

3) 만성 피로 증후군

□ 조직적인 관리

〈표 II-12〉 피로도 관리방안

구 분	세부사항
돌봄일정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 4시간 이상, 야간, 심야 돌봄 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 가능하도록 일정 조정 • 영아종일제 활동 아이돌보미는 충분한 휴식 가능하도록 배정
휴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신청은 합리적으로 처리
작업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 위험요소, 실외놀이, 이동시 위험 요인 예시 제공 등 예방 및 관리 • 아동 돌봄활동 시 사고 요인 및 사고 사례 공유 등 예방 관리
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와 관련된 사고나 건강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 • 피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시행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아이돌보미에 맞게 재구성함

□ 개인적 관리

- 규칙적인 운동
- 금연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습관성 약물 사용 피하기
- 가능한 카페인(커피 등)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
- 균형 잡힌 식사. 설탕과 같은 단순당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
- 적절한 체중을 유지
- 충분한 수면 취하기
-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 배우기: 이완운동, 스트레칭 등을 활용
- 고충이 있을 때 주위사람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습관 갖기

〈표 II-13〉 만성피로 관리 방안

생활습관 ¹⁾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한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을 주 5일간 최소 12주간 진행하고, 매 운동시 5~15분 정도 지속한다. 최대 30분이 될 때 까지 매 주 1~2분씩 운동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소비량의 60%로 제한하고, 처방된 한계 이상으로 지나치게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이요법 ²⁾	몸 상태에 따라 음식을 섭취한다.
	음식 민감성으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양하고 폭넓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증상의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된다.
	담백한 채식이나 녹말, 단백질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다당류로 정제되지 않은 음식(현미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저지방 육류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인공적인 첨가물이 포함된 모든 가공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커피, 홍차, 카페인이 함유된 소다, 콜라, 인삼, 마테차, 마황 등과 같은 자극제와 알코올, 단맛이 나는 감미료, 동물성 지방, 인공 식품 첨가제 등은 삼간다.
사과산(APT포함), alpha ketoglutarate, CoQ10, 비타민 B12, 로열젤리, 청록 해조류 등을 권장한다.	

자료 :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

2) 중앙일보(2015.7.30.). “만성피로증후군 식이요법’ 담백한 채소와 정제되지 않은 음식이 좋아”.

<https://news.joins.com/article/18351315>

라. 사고관련 요인 관리

□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소의 발견 및 제거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역할 교육
- 아이돌보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
 - 매뉴얼의 구성 : 넘어짐 사고, 끼임 사고, 화상 사고, 절단 또는 베임 사고 등 사고의 유형화 및 각 유형별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또는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으로 구성

〈표 II-14〉 대처방안 예시⁵⁾

사고 유형	대처 방안
(넘어짐 등) 골절 및 끼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움직이지 않기 ○ 동료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 전화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기 ○ 가족과 제공기관에 연락하기 ○ 병원 진료받기
화상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은 가위로 잘라 조심스럽게 벗기기 ○ 화상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차가운 수돗물로 15~30분 정도 식히기 ○ 전기 화상의 경우 전기 스위치 내리기 ○ 화상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기 ○ 감자 붙이기, 된장, 치약, 소주 바르기 등 민간요법 금지 ○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화상 전문 병원 진료 받기 ○ 가족과 제공기관에 연락하기
절단 또는 베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단부 상태를 살핀 뒤, 절단 부위를 직접 압박하기 ○ 출혈의 정도를 확인한 후, 지혈이 안 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하기 ○ 출혈이 계속되면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압박하고 압박시간 확인하기 ○ 절단된 부위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기 ○ 출혈, 절단이 심각한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기 ○ 가족과 제공기관에 연락하기
화재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 대피 경로 결정하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 전화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기 / 화재 경보 비상벨 누르기 ○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기 ○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동하기
교통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번호 및 운전자 전화번호 확인 ○ 사소한 사고라도 병원 방문 ○ 사고 대비 신분증 항상 소지 ○ 경찰서(112)에 신고하기 ○ 가족과 제공기관에 연락하기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전사고 예방 대응 지침. pp.16~17.

□ 넘어짐 방지

- 욕실에서 물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또는 스티커 부착
- 돌봄아동 안전보호시 아이돌보미 본인의 안전도 동일하게 주의할 것
- 가정내 넘어짐 유발 가능 가구 등 주의, 예를 들어 매트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함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동의 손과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동
- 급하게 뛰어 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기
- 아동과 보행 시 아동 주시와 전방시야 확보
-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기
- 미끄럼방지용 신발 착용
- 유모차, 자전거 등 운반시 주의

□ 화상 방지

- 뜨거운 음식물을 옮길 때나 다룰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서두르지 않도록 함
- 뜨거운 음식물을 다룰 때 아동이 갑자기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 뜨거운 음식물을 다루는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절단 또는 베임 방지

- 찢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는 물건의 사용 시 집게 등 사용
- 작업에 적합한 도구(칼, 도마 등) 사용
- 슬리퍼 등의 착용 금지
- 앞치마, 팔토시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 작업공간 내 정리정돈 실시
- 문구용 가위의 경우 베일 위험이 없는 안전가위 사용

Ⅲ. 돌봄아동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1. 돌봄아동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⁶⁾

1) 영아기(0세)

□ 발달 특성

- 기본적인 반사운동과 감각능력 발달로 가장 극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며, 목 가누기, 앉기 등 기본적인 대근육과 잡기, 쥐기 등의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짐
- 뼈의 조직이 연골에서 점차 경골화되어 뼈가 단단해짐에 따라 점차 골격이 발달하고 내부 기관이 보호됨

□ 영아기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활동범위가 좁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주택'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아기의 안전사고는 침실가구(37.3%), 유아용가구(9.6%), 거실가구(6.7%)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영아기의 안전사고 총 10,949건 중 '추락'사고가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사고가 12.4%이었으며, 이외에 '미끄러짐·넘어짐'이 3.9%, 고온물질에 의한 위해가 6.9%로 나타남

〈표 Ⅲ-1〉 영아기 유해유형별 현황(2015~2019)

순위	유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비율
1	추락	침대, 소파,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49.2%
2	부딪힘	거실장 및 TV장, 침대, 테이블 등	12.4%
3	미끄러짐·넘어짐	목재마루재, 바닥재, 계단 등	8.9%
4	고온물질에 의한 위해	전기밥솥, 커피포트, 고데기 등	6.9%
5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분유류, 달걀, 치즈류, 이유식 등	5.3%

6) 한국소비자원(2020),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비율
6	이물질 삼킴/흡인	스티커, 비닐 랩, 살충제 등	5.2%
7	놀림·끼임	문, 승용물, 옷장, 냉장고 등	4.4%
8	베임·찢림	손톱깎이, 완구류, 면도기 등	3.0%
9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전신거울, 선풍기, 덤벨 등	1.6%
10	동물에 의한 상해	애완동물 등	0.9%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0.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p.19.

2) 걸음마기(1~3세)

□ 발달특성

- 영아기보다 운동능력이 향상되고 신장에서 머리의 비중이 점점 작아져 신체균형이 발달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며, 분류능력의 발달로 단순한 사물을 분류할 수 있고, 자아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함
- 걸음마기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범위가 점차 넓어지나 불완전한 신체 균형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걸음마기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최근 5년간 ‘주택’,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교육시설’ 순으로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안전사고 위해 품목으로는 ‘바닥재’와 ‘침실가구’가 각각 14.3%, 1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안전사고 유형은 ‘부딪힘’과 ‘미끄러짐·넘어짐’이 각각 26.5%, 25.7%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표 Ⅲ-2〉 걸음마기 위해유형별 현황(2015~2019)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비율
1	부딪힘	침대, 식탁, 책상 등	26.5%
2	미끄러짐·넘어짐	목재마루재, 바닥재, 계단 등	25.7%
3	추락	침대, 소파, 의자, 유모차 등	16.6%
4	이물질 삼킴/흡인	구슬, 완구, 조립용 블록, 스티커 등	8.1%
5	놀림·끼임	문, 승용물, 금속문 등	8.0%
6	고온물질에 의한 위해	정수기, 전기밥솥, 커피포트, 고데기 등	3.8%
7	베임·찢림	칼, 가위, 면봉 등	3.8%
8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달걀, 우유, 조리식품 등	3.0%
9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선풍기, 거울, 문, 서랍장 등	1.8%
10	동물에 의한 상해	애완견	0.9%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0.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p.22.

3) 유아기(4~6세)

□ 발달특성

-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서 움직임이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지며, 소근육 조절 능력이 발달하여 양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활동적인 놀이를 즐기고 유치원, 놀이터, 키즈카페 등 외부활동이 증가함

□ 2019년 기준 유아기에 발생한 안전사고 중 '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61.7%로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으로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이 9.1%, '교육시설'이 7.3%로 나타남

□ 유아기 안전사고는 '놀이터시설' 11.1%, '바닥재' 11.0%,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7.8% 순으로 발생함

□ 최근 5년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30.0%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의 경우 24.4%로 나타났으며, 이어 '추락'이 15.5%, '놀림·끼임'이 8.2%로 나타남

〈표 Ⅲ-3〉 유아기 위해유형별 현황(2015~2019)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비율
1	미끄러짐·넘어짐	바닥재, 키펠드, 계단, 자전거 등	30.0%
2	부딪힘	책상, 침대, 문, 식탁 등	24.4%
3	추락	침대, 미끄럼틀, 소파 등	15.5%
4	놀림·끼임	목재문, 승용물, 금속문 등	8.2%
5	이물질 삼킴/흡인	구슬, 완구, 조립용 블록, 동전 및 화폐 등	6.7%
6	베임·찔림	가위, 칼 등	4.3%
7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치킨, 고기류, 조리식품 등	4.1%
8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완구, 승용물, 트램폴린 등	2.2%
9	고온물질에 의한 위해	화로, 글루건, 정수기, 고데기 등	1.5%
10	동물에 의한 상해	애완견 등	1.3%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0.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p.26.

4) 학령기(7~14세)

□ 발달특성

-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논리적 사고와 신체적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로, 뼈와 근육의 발달로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신체의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함
- 집단놀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함

□ 2019년 학령기 안전사고 중 '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1.5%로 어린이 발달단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어 '교육시설'이 13.7%, '도로 및 인도' 9.4%,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9.0% 순서로 나타남

□ 학령기 안전사고는 '놀이터 시설'이 13.8%, '필드 및 코트운동장비' 8.7%, '자전거'가 7.6%, '바닥재' 5.4%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학령기 안전사고의 위해유형을 살펴보면, 자전거, 바닥재 등에 의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30.9%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7.4%, '추락'이 11.3% 순으로 나타남

〈표 III-4〉 학령기 위해유형별 현황(2015~2019)

순위	위해유형	주요 원인품목(소분류)	비율
1	미끄러짐·넘어짐	자전거, 바닥재, 키보드 등	30.9%
2	부딪힘	책상, 침대, 문, 철봉 등	17.4%
3	추락	철봉, 미끄럼틀, 기어오르기 시설 등	11.3%
4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치킨, 조리식품, 회, 햄버거 등	8.3%
5	충돌, 추돌 등 물리적 충격	공, 야구방망이, 장난감 총 등	7.9%
6	베임·찔림	가위, 칼, 연필, 식료품 캔 등	6.8%
7	눌림·끼임	문, 승용물, 자전거 등	5.8%
8	동물에 의한 상해	애완견, 애완곤충 등	3.0%
9	이물질 삼킴/흡인	장난감 총, 구슬, 동전 및 화폐 등	2.9%
10	파열·파손·꺾어짐	세면대, 유리창, 유리문, 유리컵 등	2.1%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0. 2019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p.29.

나.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 예방법

- 사고로 인한 손상은 영아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집밖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 사고로 인한 손상과 사망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고의 종류별 예방법은 발달 특성과 연관하여 이해하면 바람직함. 연령에 따른 사고 예방 방법은 다음 <표 II-5>, <표 II-6>과 같음

〈표 III-5〉 영유아기 아동의 사고 예방7)

영아		유아		
월령	출생~4개월	4~7개월	8~12개월	
주요 발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는 반사(crawling reflex)와 같은 불수의적 반사로 앞으로 기어나갈 수 있다. 뒤집기를 할 수 있다. • 눈과 손의 협응(eye-hand coordination) 과 수의적으로 잡는 반응이 증가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집기를 한다. • 순간적으로 앉는다. • 작은 물체를 잡고 조작할 수 있다. • 떨어진 물건을 찾는다. •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발달된다. • 아주 작은 물체에 시선을 집중시켜 찾아낼 수 있다. • 입을 사용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기어 다닌다. • 물체를 집어 던진다. • 기구를 잡고 일어서거나 혼자 일어난다. • 기구 주위를 돌아다닌다. • 물체를 입 안에 집어넣고 탐색한다. • 걷고 기어오른다. • 억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 물체를 집어당긴다. • 부모에서 떨어져 탐색한다. • 간단한 지시나 단어의 이해력이 증가한다. • 물에서는 무방비 상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이 강하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 보행기술이 발달한다. • 미세운동이 발달한다. • 작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 물건을 집어당긴다. • 입구가 좁은 병에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다. • 물건을 던지고 되받기를 반복한다. • 무엇이든 입에 넣는다. • 사람과 대부분의 용기 뚜껑을 연다. • 기어오른다. • 쉽게 산만해지며 여러 가지 기술이 서른다.
	흡인(aspi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연령은 흡인의 위험은 높지 않으나 부모는 미리 안전대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수유 시 아기를 안고 먹이고 젖병을 받쳐서 수유하지 않는다. • 질식에 대한 응급처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분리되지 않는 노리개 젓꼭지를 이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되지 않는 노리개 젓꼭지를 사용한다. • 바닥에 작은 물체를 놓아두지 않는다. •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씨가 있는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 • 누워 있을 때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 • 장난감에서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추나 구슬 등 작은 물체들이 영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물체는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음식을 잘게 썰어 제공하고 줄 때 조심해야 한다. • 5~7개월 사고 예방 대책을 참조한다.
사고예방 대책				

7) 이수연 외. 최신 아동건강간호학 총론. 수문사: 서울. 2019.

영아				유아
월령	출생~4개월	4~7개월	8~12개월	12개월 이후
질식(suffocation) 익수(drow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비닐로 된 봉지나 기병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매듭으로 묶어서 버린다. 비닐 재질으로 매트리스나 베개를 싸우지 않는다.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베개는 침대에 두지 않으며 부드러운 담요를 사용한다. 아기 침대는 품질 규격에 맞춰 디자인된 것으로 하고, 매트리스가 꼭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틀이 없게 한다. 침대를 다른 기구와 떨어진 자리에 배치한다. 영아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피한다. 줄이 있는 노리개 젓꼭지를 영아의 무릎에 걸어두지 않는다. 절대로 영아를 목욕통에 혼자 두지 않는다. 12개월 이하 영아는 어른 침대에 혼자 두지 않는다. 영아를 차 안에 혼자 두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수에 대한 안전책으로 수영을 가르칠 수도 있다. 풍선 같은 장난감은 주지 않는다. 핀이 있는 모든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 아기용 침대 난간은 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높이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문을 항상 닫아둔다.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나 가구는 문을 열어 놓은 채 보관한다. 수영장에는 울타리를 해야 하며, 물통에 담긴 물이라도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수영장의 물은 제거해둔다. 목욕탕 문을 닫아둔다. 영아가 수영장에 있을 때 항상 어른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영아를 둔다. 목욕통에 영아가 있는 경우 영아의 손을 어른이 잡고 있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낡은 냉장고, 오븐 등 유아가 들어갈 만한 물건은 버리거나, 문이 열리지 않게 한다. 풍선이나 풍선이 달린 나팔 등을 주지 않는다.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풍선이 타지면 질식할 수 있다. 목욕탕의 문을 닫고 번기 뚜껑을 닫는다. 물이 채워진 욕조에서 놀 때는 곁에서 지켜본다.
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기용 침대의 난간은 항상 올려져 있어야 한다. 영아를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영아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닥이다. 높은 곳에 영아를 두는 경우 고정 벨트로 영아를 고정하고 혼자 두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에 영아를 둘 때는 고정벨트로 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근처에서 보행기를 태우지 않는다. 영아가 기구를 잡고 서려고 할 때 기구가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되어야 한다. 계단 입구는 거리개로 막혀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문에 스크린을 치고 방범용 창틀을 단다. 계단 끝에 문을 단다. 목욕통이나 샤워실 안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다. 아동용 침대의 난간을 충분히 올린다. 아이가 기어 올라갈 만한 기구나 장소는 문을 잠그거나

영아			유아
월령	출생~4개월	4~7개월	8~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영아를 의자에 혼자 두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용 침대나 조립용 놀이터에는 아동이 뒹고 올라갈 수 있으므로 큰 인형이나 페드를 두지 않는다. 계단 가까운 곳에서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옷을 안전하게 입힌다. 신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하고, 구두 끈을 잘 매고, 바지가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한다.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연령의 영아에게 흔하지는 않지만, 부모는 사고 예방대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와 장난감인지 확인한다. 독성물질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둔다. 약병 뚜껑은 잠금 상태로 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식물은 바닥보다 높은 곳에 둔다. 세척제, 살충제, 기타 독성 물질은 많은 양을 보관하지 않는다. 독성물질을 담았던 용기는 빨리 버린다. 독성물질을 음식보관용 용기와 함께 두지 않는다. 화장품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단추 크기의 건전지는 사용 후에 버리고, 새 건전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독성물질은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약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막개를 꼭 덮는다. 약을 과자와 함께 주지 않는다. 빈 독극물 통은 버린다. 그 통에 음식이나 다른 용액을 보관하지 않는다. 독성물질 상표를 제거하지 않는다. 토근 시럽을 상비한다. 가까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물 줄 때 상황이 아니라 약이라고 말한다. 영아가 기침 혹은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약 뚜껑은 영아가 열지 못하도록 보호용 캡으로 잠겨있어야 한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영아			유아
월령	출생~4개월	4~7개월	8~12개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한다. • 저지레인저로 조제유를 데우지 않는다: 항상 수유 전에 조제유의 온도를 확인한다. • 무육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 영아를 무릎에 두거나 가까이 안고 있을 때 뜨거운 물을 따르지 않는다. • 담뱃재가 영아에게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 영아를 몇 분 이상 뜨거운 햇빛 아래에 두지 않는다. • 찬 수증기를 사용한다. • 영아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의 고정용 벨트가 뜨거운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거운 물체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필요 시 선크림을 바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 등 뜨거운 물체 옆에 있을 때는 영아를 잘 관찰한다. • 전기는 영아의 손이 닿지 않게 감추어 둔다. • 콘센트 입구는 플라스틱 덮개로 가린다. • 식탁보를 영아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뱃재가 영아에게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 영아를 몇 분 이상 뜨거운 햇빛 아래에 두지 않는다. • 찬 수증기를 사용한다. • 영아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의 고정용 벨트가 뜨거운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자주 쓰는 가구나 물품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열기구, 커피메이커, 주방기구, 성냥, 라이터, 촛불, 뜨거운 음식, 다리미, 전기기구의 코드 • 전기 콘센트는 플라스틱 덮개를 해둔다. • 식탁보가 아동의 손에 닿지 않게 한다. • 욕조의 물 온도를 점검하고 수도꼭지를 가리고 놀지 못하게 한다. • 햇빛에 노출될 때는 햇빛차단 크림을 바른다(SPF 150이상 선크림: 모든 연령에서)
자동차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용 카시트는 뒷 좌석에 두고 두시자석 등반이를 마주 보도록 카시트를 설치한다. • 자동차 안에서 영아를 어른의 무릎 위에 두지 않는다. • 유모차를 정차된 차 뒤에 두지 않는다. • 에어백이 달린 조수석에 영아를 앉히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개월 영아의 사고예방책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 밖에서 놀 때 지켜본다. • 차도나 주차된 차 뒤에서 놀지 못하게 한다. • 아동을 지켜보지 못할 때는 문을 잠근다. • 세발 자전거를 탈 때 감독한다. •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시킨다.
신체적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카로운 물체는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기저귀 핀 등 뾰족한 물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혹은 나무 재질의 매끄럽고 둥근 장난감을 구입한다. • 길고 뾰족한 장난감은 피한다. • 소음이 심한 장난감은 사용하지 않는다. • 날카로운 물체는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을 한다. • 칼, 가위, 이쑤시개 같은 날카로운 거나 뾰족한 물건을 주지 않는다. • 뾰족한 물건이 얼굴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아동을 교육시킨다. • 위험한 물건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표시가 나도록 스티커를 붙인다.

〈표 III-6〉 학령기 아동의 사고 예방⁸⁾

주요발달특성		사고예방대책
자동차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활동이 증가한다 • 쉽게 흥분하거나 산만해진다. • 경기의 승부에 몰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탈 때에는 좌석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 승차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예: 팔을 차 밖으로 내밀지 않기). • 안전장비를 갖도록 한다(보호장구 특히 헬멧 착용).
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하기 쉽다. • 작업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 전체운동이 불안정하나 겁이 없다. • 수영을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운동 후에는 휴식을 하도록 한다. • 안전한 곳에서 감독 하에 수영한다. • 잠수하기에 충분한지 수심을 확인한다. • 동료와 함께 수영한다. • 물속에서나 배를 탈 때에는 공인된 부양 장비를 사용한다. •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심이 증가한다. • 모험을 즐긴다. •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위험이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화상위험 물질: 휘발유, 성냥, 접화기, 폭죽, 라이터, 조리기구, 화학약품) •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 조리 시의 안전수칙을 교육한다(저온 사용, 튀김요리 하지 않기, 증기에 썬지 않기)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규칙을 중요시 한다. • 또래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 친구들에게 몰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피린과 알코올 같은 약물과 화학물질 섭취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교육한다. • 다른 사람이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을 먹도록 하면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도록 교육한다. •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표기된 용기에 담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8) 이수연 외. 최신 아동건강간호학 총론. 수문사: 서울. 2019.

2. 돌봄아동 감염병 예방관리

가. 연령대별 호발 감염병

□ 연령대별 감염병은 다음 <표 II-7>과 같음

- 영아는 RS 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이 빈발하는 감염병임
- 유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장출혈성 감염증,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수족구병임
- 초등학교생 빈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임

<표 III-7> 연령대별 빈발 감염병

영아 (1세 미만)	유아 (1~6세)	초등학교 (7~12세)
RS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수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백일해
	성홍열	성홍열
	수족구병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감염병 관리 안내서

나.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감염병 환자 발생시 발병 질병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 <표 Ⅱ-8>과 같음

<표 Ⅲ-8>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급명	감염병	잠복기	전염기간	환자 관리 및 격리기간
제1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1~14일 (평균 4~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출 •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제2급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2~10일 (평균 3~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환기간 및 증상 소실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전파 가능하며 보통 성인에서 1주일 이하, 어린이의 1/3은 3주가량 균 배출 • 드물지만 보균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사 증상 소실되고,(항생제 치료한 경우 완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백일해	4~21일 (평균 7~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구기 시작 또는 발작성 기침 시작 후 3주간 전염 가능 • 적절한 항생제 치료시 투약 5일이 지나면 전염력 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항생제 투약 후 5일까지 호흡기(비말) 격리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
	유행성 이하선염	12~15일 (평균 16~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현 3일 전부터 5일 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하선염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수두	10~21일 (평균 14~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진 발생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격리(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격리) • 예방접종을 하여도 가피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격리해야함 • 수두에 걸린 엄마에게서 출생한 신생아가 입원중인 경우에는 생후 21일까지 격리
	성홍열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시작하면 24시간 후 전염력 소실 • 치료하지 않는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전염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 까지 호흡기(비말)격리

급명	감염병	잠복기	전염기간	환자 관리 및 격리기간
제4급	인플루엔자	1~4일 (평균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력은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단, 소아나 면역저하환자에게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 이상 길어 지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타인과 접촉을 제한
	수족구병	3~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의 발현 유무에 상관없이 감염 후 호흡기로는 1~3주 이내, 분변을 통해서는 7~10주까지도 바이러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
	로타 바이러스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배출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시작되어 대개 2주 이내에 전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이 없는 아이들과 구분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	10~50시간 (12~4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로 바이러스 배출이 높은 시기인 증상발생 2~5일 후에 대변 1g당 약 50억개 바이러스를 보유 증상호전 후 2주 이상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 소실 후 24~72시간 집단생활 제한
	RS바이러스 감염증	2~8일 (평균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될 수 있으며, 증상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영유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 감염증이 있는 경우 접촉주의 추가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3판. pp.85-8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부산광역시·질병관리본부. 2020. 법정 감염병 알아보기. p.155(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pp.166~167(백일해), pp.170~171(유행성이하선염), pp.127~128(수두), pp.198~199(성홍열), pp.315~316(인플루엔자), pp.341~342(수족구병), pp.417~418(로타바이러스), pp.426~427(노로바이러스감염증), pp.456~457(RSV바이러스 감염증)

2)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 조치사항

□ 감염병 환자 발생시 접촉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표 II-9>와 같음

<표 III-9>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 조치사항

군명	감염병	접촉자 관리대상	접촉자 관리 방법
제1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분 이상 확진자와 2m이내 거리에 있었던 경우 • 확진환자를 집에서 돌본 경우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가진 경우 (포옹 또는 입맞춤) • 식음료기구를 함께 사용한 경우 • 재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호흡기 비밀에 노출된 경우 * 미국 CDC기준 밀접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증상 발생여부 관찰 • 유증상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동
제2급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공동 폭로자 • 환자의 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여부 관찰) 환자의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여부를 감시
	백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전파 위험이 있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 동거 또는 동숙인으로 가족이나 기숙사룸메이트 등 - (고위험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 - (고위험군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집단)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고위험군에 접촉이 예상되는 청소년 및 성인(임신부 3기, 의료종사자, 영유아돌보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 후 예방요법) 연령, 예방접종력, 증상 발현 유무와 관계없이 항생제 복용, 격리 • (예방접종) 불안정한 예방접종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밀접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와 1m이내 대면접촉 - 호흡기 비인두 구강분비물에 직접 접촉 - 전염기 환자와 1시간 이상 한정된 같은 공간에서 가까이 머무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불안정한 예방접종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군명	감염병	접촉자 관리대상	접촉자 관리 방법
	유행성 이하선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았거나,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 발생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력이 없는 사람(감수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수성자 중 백신 접종 금기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백신접종 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발생 시, 마지막 환자의 증상 발생일로부터 최소 26일까지 등교/등원 중지
	수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생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력이 없는 사람(감수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및 동거인 같은 실내 공간에서 5분 이상 있었거나, 대면 또는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 의료기관 내 같은 병실을 사용했거나, 대면 또는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접촉 후 가능한 3일(최대 5일) 이내에 백신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수성자 중 백신 접종 금기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두 감수성이 있는 임신부 분만 전 5일부터 분만 후 2일 이내 수두가 발병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산모에서 재태기간 28주 이상으로 태어난 미숙아 수두에 대한 산모의 감수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재태기간 28주 미만 혹은 1k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면역저하자(면역결핍증환자, 암환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출 후 예방요법) 면역글로불린(VZIG)을 10일 이내에 되도록 빨리 1회 근육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수성자 중 입원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또는 노출 후 예방요법) 면역력 및 접촉 가능 여부에 따라 시행 퇴원하거나, 퇴원할 수 없는 경우 노출 후 8~21일 때까지 격리(면역글로불린 투여 받았다면 생후 28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수성자 중 의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또는 노출 후 예방요법) 면역력 및 접촉 가능 여부에 따라 시행 노출 후 8~21일 때까지 환자 접촉 금지

군명	감염병	접촉자 관리대상	접촉자 관리 방법
	성홍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와 접촉한 사람(일상적으로는 관리하지 않으나, 집단발생 시 관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행 역학조사 시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까지 접촉자 중 추가 발생여부 감시 환자와 접촉한 가족은 잠복기동안 추가 발생여부 확인 집단 시설에서 침습성 A군 연쇄구균 감염증*, 급성 류마티스열, 연쇄구균감염 후 사구체신염 유행 의심 시 보균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 고려 * 과사성 근막염, 독성쇼크 증후군 등
제4급	인플루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와 접촉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고위험시설*에 인플루엔자 유행시에는 접촉자에 대해 예방화학 치료 고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노출자 환자의 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병여부 감시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공동 폭로자 환자의 접촉자(같은 반, 가족, 동일 기숙사 방 사용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 노출일(공동 섭취 또는 환자 접촉)로부터 50시간 동안 증상발생여부 관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생이 있는 경우 7일간 추가발생 여부 모니터링
	RS 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노출자 환자의 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병여부 감시
	수족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노출자 환자의 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병여부 감시, 발병 시 스스로 자가격리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3판. p.25(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부산광역시·질병관리본부. 2020. 법정 감염병 알아보기. p.156(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p.167(백일해), p.171(유행성이하선염), pp.128~129(수두), pp.198~199(성홍열), p.316(인플루엔자), p.342(수족구병), p.418(로타바이러스), p.427(노로바이러스감염증), p.457(RS바이러스 감염증).

9)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quarantine.html>

다.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환경관리

1) 기본사항

- 환자 및 의심증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조리, 음식취급, 돌봄활동 등 금지
- 환자 및 의심증상자는 식사 전 및 배변 후에는 올바른 손 씻기 수행
- 환자 및 의심증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금지

2) 감염병 별 소독방법(감염병 발생 시)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 직업적으로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라.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¹⁰⁾

1)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¹¹⁾

-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 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등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다.

□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외한 감염병의 예방관리는 <질병관리본부(201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감염병 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단, 각 감염병의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의 경우(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 2016,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함

1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및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

- 영유아 및 아동의 씻기기, 먹이기, 안기
 - 손, 목 또는 어린이의 분비물이 닿은 모든 부위를 씻어야 함
 - 옷에 분비물이 묻은 경우, 옷을 갈아입혀야 함 (단추를 채우는 셔츠에 분비물이 묻은 경우 이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다시 씻어야 함)
 - 오염된 옷은 비닐 봉투에 넣거나 세탁기로 세탁
 - 영유아와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들은 갈아입을 옷을 여러 벌 준비
 - 아이돌보미는 젖병을 만지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분유를 먹이는 데 사용한 젖병과 뚜껑, 젖꼭지 및 기타 용품들은 매번 사용 후 식기 세척기나 병솔, 비누, 물을 사용해서 세척
- 음식물 준비 및 식사 제공
 - 음식물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싱크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아이돌보미는 어린이가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직후에 손을 씻도록 지도
 - 아이돌보미는 음식물을 준비하기 전과 어린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와준 후 자신의 손을 씻도록 함
- 기본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및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2)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함

□ 전파경로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감염
-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
-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해 발생

□ 증상

-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함
- 증상은 5~7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조리 전,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뒤, 더러운 옷이나 리넨을 취급 후 등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섭취하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 칼, 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 * 조리도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을 조리 및 준비 금지
- 강·호수·수영장에서 수영 시, 강·호수·수영장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

- 환아와 환아 가족은 손을 자주 씻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
- 환아의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분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3) 백일해

- 그람음성간균인 *Bordetella pertussis*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 전파경로

-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거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가 주된 전파경로

□ 증상

- (전구기)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이 1~2주간 나타남
- (경해기) 전구기 이후 2~4주간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고 기침 후에 구토를 보임
- (회복기) 경해기 이후 1~2주에 걸쳐 회복기에 이르는데 이때 상기도 감염이 이환되어 다시 발작성 기침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음
- 기침, 콧물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 점진적으로 심해져 증상 발생 1~주가 경과 하면 발작성 기침을 하고, 숨을 들이쉴 때 특징적인 높은 툰의 “웁(whoop)” 소리가 남
- 연령, 백신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증상이 다양할 수 있으며, 뚜렷한 변화 없이 가벼운 기침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소독하여 사용

○ 예방접종

- 생후 2,4,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DTaP백신으로 접종 후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백신으로 추가 접종
- 이후 Td 백신으로 매 10년마다 추가접종 실시
- 11세 이후 접종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하며, 가능한 11~12세에 Tdap으로 접종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

- 환아를 격리한다.
- 기침과 함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식사를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제공
- 실내 습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를 최소화함
- 실내 공기오염(먼지, 연기 등)을 최소화함

4) 유행성 이하선염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 질환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짐

□ 증상

- 전구기에는 근육통, 식욕부진, 권태감, 두통, 미열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 2일 이상 지속되는 침샘의 부종과 통증이 특징적임
- 이하선염이 가장 흔하며, 한쪽 또는 양쪽을 침범할 수 있고, 하나의 침샘 혹은 여러 침샘을 침범할 수 있음
- 통상 1일 내지 3일 째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다 3일 내지 7일 이내에 호전됨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소독하여 사용

○ 예방접종

-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 2회 접종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¹²⁾

○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은 다른 형제와 격리

○ 관할보건소에 고지

○ 처방된 진통제가 있다면 제 시간에 투여함

○ 음식은 액체상태의 음식을 주며 씹는 음식은 주지 않도록 함

* 이유 :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악화됨

○ 식간에 물을 자주 주도록 함

○ 귀밑에 얼음주머니를 대주어 통증을 감소시킴

○ 감염된 아동은 기침할 때 손을 가리고 기침하도록 교육함

* 이유 : 감염된 사람의 타액이나 기침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임

5) 수두

- 발진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소양감을 동반하며 반점에서 구진, 구진에서 수포로 급속히 진행된다. 보통 머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몸통, 사지로 퍼져나감

□ 전파경로

- 수포성 병변에 직접접촉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12) 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2016).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31.

□ 증상

○ 수두의 임상 증상

- (전구기) 발진 발생 1일 내지 2일 전에 권태감과 미열이 동반될 수 있으나, 소아는 대개 발진이 첫 번째 증후로 나타는 경우가 많음
- (발진기) 발진은 주로 몸통, 두피, 얼굴에 발생하며 소양감을 동반하고, 24시간 내에 반점(macule), 구진(papule), 수포(vesicle), 농포(pustule), 가피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동시에 여러 모양의 발진이 관찰되기도 함
- (회복기)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되며 회복됨

- 선천성 수두 : 임신 20주 이내에 감염된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선천성 수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 저체중, 사지 형성 저하, 피부 가피, 부분적 근육 위축, 뇌염, 뇌피질 위축, 맥락망막염과 소두증 등 다양한 이상소견이 나타남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소독하여 사용

○ 예방접종

-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13세 이상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예방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 * 금기사항 : 이전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 임신, 면역저하 및 면역결핍이 있는 경우
 - * 주의사항 : 중증도 혹은 중증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질환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면역글로불린, 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접종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¹³⁾

- 수두가 의심되는 아동은 가정의 다른 아동과 격리함
-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아이돌보미는 방문을 중지함
- 관할 보건소에 보고함
 - * 이유 : 관할보건소와 연락하여 추가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임

13) 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2016).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35.

- 감염된 아동의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손톱을 짧게 깎고 긁지 못하도록 함
- 영아나 어린 유아는 손싸개를 해주도록 함
- 가려움증이 심하므로 카라민 로션 등을 발라주고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있을 경우 제 시간에 맞추어 투약함

6) 성홍열

-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 -hemolytic Streptococci)에 감염되어 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갑작스런 발열, 구토, 복통, 인후통, 발진을 동반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임

□ 전파경로

- 환자와 보균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
- 환자와 보균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손이나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
- 무증상 보균자의 빈도는 8.5~21.9%로 보고

□ 증상

- 인두통에 동반되는 갑작스런 발열, 두통, 식욕부진, 구토, 인두염, 복통 등
- 발진 : 1~2일 후면 작은 좁쌀 크기로 입주위 및 손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나지만 발진은 병의 첫 징후로 나타나기도 함. 발진은 3~4일 후면 사라지기 시작하며 간혹 손톱 끝, 손바닥, 발바닥 주위로 피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함
- 붉은 얼굴 : 얼굴은 홍조가 나타나나 입주위는 창백
- 혀 : 처음에는 회백색이 덮이고 돌기가 현저히 두드러지는 모양에 발병 후 2~3일 지나면 붉은색을 띠고 돌기가 빛는 딸기 모양으로 새빨간 혀가 됨
- 편도선이나 인두 후부에 점액 화농성의 삼출액, 경부 림프절 종창 등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예절
 -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 및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식기구, 담요, 수건 등 개인용품 공유하지 않기

○ 예방접종 : 현재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

○ 처방에 따라 항생제 투여

○ 열성기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함

○ 인후통 완화를 위해 진통제, 함수, 항균 스프레이와 찬 습기를 적용함

○ 열성기 동안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자극적 음료(오렌지주스 계열)나 거친 음식은 피하고, 아동이 먹을 수 있을 때는 유동식부터 시작함

7) 인플루엔자

○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두,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임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음

○ 인플루엔자는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임

□ 전파경로

○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로 전파

□ 증상

○ 고열(38~40℃),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 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인후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증상지속기간 5~9일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마스크 착용 등 예방행태 실천
-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환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특성 및 일반사항
 - * 권장 백신주(유행 예측주)가 절기별로 달라 매년 새로운 백신 생산 및 접종 필요
 -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 및 초반 약 3개월 동안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
- 예방접종 권장 시기 및 방법
 - * 권장시기 : 10~12월
 - * 접종 횟수 및 용량
 - 만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은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생후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소아 : 처음 받는 경우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¹⁴⁾

- 아동의 경우 격리는 필요 없으며 다음 사항대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함
- 부모가 약을 부탁한 경우, 제 시간에 투약함
- 4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38℃ 이상이면 부모에게 전화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함
-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도록 하고 바로 손을 씻도록 함
 - * 이유 : 비말전파를 예방하기 위함
- 콧물로 코가 헐었을 때는 코 주위에 바셀린을 발라줌
 - * 이유 : 피부조직을 보호하기 위함
- 식간에 물을 소량씩 자주 먹이도록 함
- 누워서 안정과 수면을 취하도록 함

14) 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2016).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39.

8) 수족구병

- 주로 5세 이하 유아 및 아동에게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임
- 콕사키바이러스 A16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매우 일반적인 원인균임

□ 전파경로

-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 가능
- 전파의 위험이 높은 장소 : 가정(감염자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 놀이터, 병원, 여름캠프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

□ 증상

- 전신증상 : 발열, 식욕감소, 무력감
- 위장증상 : 설사, 구토
- 발진/수포(물집) : 주로 입, 손, 발,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 예방법

- 현재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
- 개인위생이 최선의 예방 방법임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 씻기
 -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기침예절
 -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실시하기
 - 철저한 환경관리
 -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할 것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¹⁵⁾

- 입 안에 수포를 갖고 있고 코를 흘리거나 손에 수포성 병변을 갖고 있는 아동은 가정의 다른 형제와 격리하는 것이 적절함
 - * 이유 :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1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됨
-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어 열을 내리도록 함
- 목 안이 아파 잘 먹을 수 없으므로 밥보다는 죽을 주도록 함
- 맵고, 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담백한 음식을 제공
 - * 과일주스는 좋으나 오렌지 주스는 피하도록 함
- 아동이 입안이 아파 잘 못 먹으면 약간 찬물을 먹이거나, 유아의 경우 설사하지 않는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음

9)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로타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만 5세 미만 아동에서 가장 흔한 설사의 원인 중 하나임

□ 전파경로

- 분변-구강 경로 감염
- 접촉 감염 및 호흡기 감염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

□ 증상

-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
- 보통 증상은 4~6일 정도 유지됨

15) 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2016).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36.

□ 예방법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기저귀 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분유섭취 : 집단시설에서 액체분유 사용 권장. 물을 충분히 끓여먹기
-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말기

○ 예방접종(백신 종류 및 접종시기)

- 로라텍(5가) : 2, 4, 6개월
- 로타릭스(1가) : 2, 4개월
- 1차 접종은 생후 6주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14주 6일까지 1차 접종시작 가능
- 접종 간 최소 간격은 4주
- 8개월 0일까지 접종 완료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¹⁶⁾

- 끓인 보리차나 전해질 용액을 소량씩 먹임. 일반 음료수(과일주스, 이온음료, 설탕물)는 설사를 더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함
 - * 이유 : 나이가 어릴수록 탈수되기 쉬우므로 설사아동에게 수분공급이 매우 중요함. 과일 주스, 이온음료, 설탕물은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할 것
- 지사제를 함부로 투여하지 않도록 함
 - * 이유 : 살모넬라 및 이질균에 의한 전염성 설사증은 지사제에 효과가 없음

1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임
-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함
-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임

16) 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2016).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p.29.

□ 전파경로

- 분변-구강 경로 감염

□ 증상

- 주요 임상적 증상 : 묽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 예방법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기저귀 간 후, 환자의 구토물을 처리한 후
 -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물 끓여먹기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

-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료됨.¹⁷⁾
- 수분 보충을 위해 스포츠 음료나 이온음료를 먹이도록 함
 - *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와 과일주스는 피할 것.
-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 추가적인 약물을 사용

11) 호흡기세포융합(RS)바이러스 감염증

- 호흡기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 중 하나임
- 2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1세 미만의 유아에서 특히 미숙아 및 면역저하 환자에서 발생하면 세기관지염과 폐렴 등 중증 호흡기감염증으로 진전됨

17)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부산광역시·질병관리본부. 2020. 법정 감염병알아보기. p.426.

□ 전파경로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 증상

-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쉼 목소리, 천명(쌉쌉거림), 구토도 가능
- 성인에서는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을,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이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을 일으킴

□ 예방법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 씻기 실천
 - 환자는 마스크 착용 등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감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장난감, 식기와 물 컵 등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직접 돌봄 시 유의사항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격려하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식욕감퇴가 있는 아동은 취향에 따라 차가운 음료나 따뜻한 음료를 줄 것
- 어린 영아는 비강의 충혈로 구강호흡을 하여 호흡, 빨기, 삼키기가 어려우므로 유의하여 조금씩 자주 수분과 영양공급을 하도록 함
- 다른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수건, 컵,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할 것
- 아동의 눈, 코, 입 등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먼저 씻을 것
- 부모가 약을 부탁한 경우, 제 시간에 투약할 것

IV. 산업재해 처리 절차¹⁸⁾

1. 산업재해란?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업무상재해 관련 법적 개선사항
 - 감정근로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2016. 3. 22) : 고객응대업무 등 감정노동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¹⁹⁾를 인정기준에 추가
 -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인정(2019.7.22.)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중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추가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세부 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8) 이하는 김신정·서정은·박정연·홍우정(2016) 아이돌물안전관리 매뉴얼(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관련 부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작성하였음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 주 조치

□ 발생 보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 중대 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을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2항제2호))

□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

-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 등에 대한 사업주 기록보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의 기록·보존 시에는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발생 방지 계획을 기록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보존기간은 3년임(「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
 - 보존 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을 보존하여도 무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기록보존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18호)

○ 근로자에 대한 조치

-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토록 조치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공단의 업무상재해 여부 확인에 따른 요양승인 여부 결정을 받아 요양을 실시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표 IV-1〉 서류의 보관의무 및 보존기간

아이돌봄 사업 해당여부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X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제7호 및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일부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1항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5항
일부	3년	산업재해 발생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4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1호 (동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3호 (동법 제39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5호 (동법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안전인증관련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보존류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6호

아이돌봄 사업 해당여부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64호제1항제7조
		지정측정기관이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4항
일부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2호 (동법 제24조제3항, 제75조제4항)
		자율안전기준 증명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 (동법 제89조제3항)
		자율검사 프로그램 증명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 (동법 제98조제3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의 종류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실시방법은 아래 <부표 2>와 같다. 아이돌봄사업은 사회 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교육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다. 즉, 산업보건 교육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자목) 다만, 아이돌봄사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나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업에 해당함과는 별개로, 실제 실사 감독이 나왔을 때 경우에 따라 사업분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표 IV-2> 안전보건 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에
채용 시 교육	일용 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 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3. 산재보상급여 종류 및 신청

□ 산재보상 신청의 주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 모두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자로 산재보상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간의 문제임. 따라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스스로 관련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최초 요양신청은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함. 이는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한 사항임. 사업주가 요양신청서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숙지 필요

□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및 신청

〈표 IV-3〉 산재보상급여 종류 및 신청절차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보 험 금 여	요양 급여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 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 최고보상기준:1일 214,402원의 70% -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 시 최저 임금 지급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등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 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1급(329일)~7급(138일) - 일시금: 1급(1,474일)~14급(55일) ※ 1~3급은 연금만 지급(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 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 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급여기초연액+가산금액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 임금의 1,300일분
	간병 급여	치료종결 후 간병(상시, 수시) 필요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직업 재활 급여	장해 1급~12급 장해급여를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 1급~ 12급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근로자 지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 련비 및 재활운동비	직업훈련비용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일부 훈련은 1인당 600 만원 이내) 직장복귀지원금 :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5,554,289원 - 최저 11,097,760원	
진폐 연금	진폐재해자에 대하여 진폐보상 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지급 다만, 요양중 재해자는 제외	진폐보상연금 : 기초연금(최저임금 60%) + 장해연금(연 24~132일분) 지급 진폐유족연금 :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 급	진폐재해자가 진폐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자료 : 고용노동부, 2020.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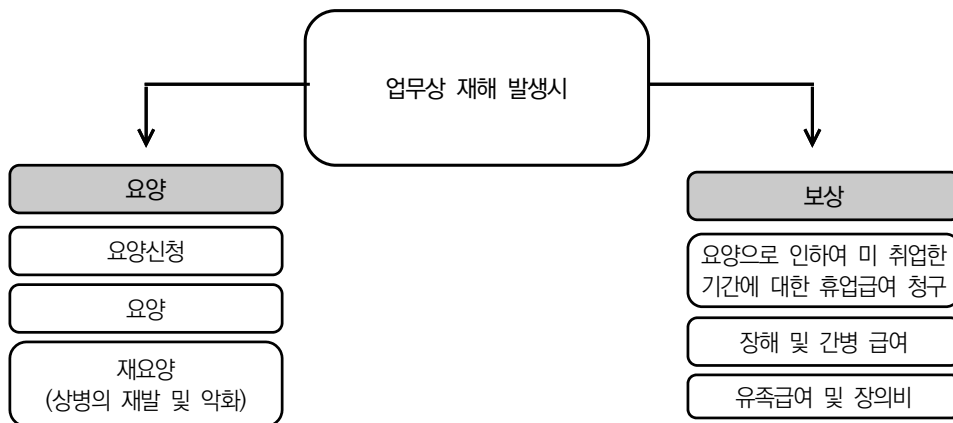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유할 때까지 지급되는 보험급여
 - 현물로 지급. 즉,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통해 보상받게 됨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함
 -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급여인 요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대해 직접 현금을 지급(요양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지나 보조기 구입비용. 간병 및 이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최초 요양 승인 여부 결정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4항)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성립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4항)

- 추가상병이나 재요양 승인 여부 결정 전,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요양업무처리 규정」 제21조제4항)
- 재해 발생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없거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상병 상태로 인하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한 경우(「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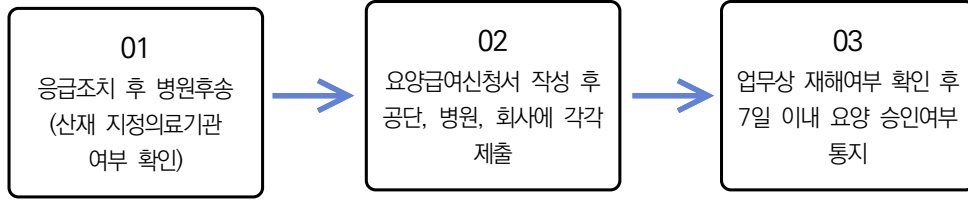
○ 요양 급여의 범위

- 원칙적으로 상병치료에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의학적 조치를 말함.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다만 일반적으로 학회 등에서 공인되지 않은 특수요법 및 신요법, 연구 목적의 진료는 그 범위에서 제외됨
- 요양급여의 수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위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 산정기준」에 의해 그 지급 수준이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재보상 서비스 절차도



요양신청절차



○ 요양 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적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가 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달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²⁰⁾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및 제106조)

-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90일 이내(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청구할 수 있음
- 원처분지사의 불승인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 불승인(기각)될 경우에도 재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산재요양 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안전보건 나침반(제조업). p.51.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 간병료, 이송 및 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의 요양비를 청구할 수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은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의 장기간 소요로 재해발생 초기 진료비 전액을 재해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요양 결정전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치료하고 추후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 간에 추후에 정산함. 단,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산재보험 요양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급여항목(「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 제3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단, ①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인정 ②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장해급여

- 장해급여의 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
 - 해당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이 달라짐
- 장해급여 판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10개 부위로 나누고, 각 부위에 있어서 기능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26종의 계열로 세분한 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후 일정 범위로 함께 묶어 같은 등급으로 정함
 - 현행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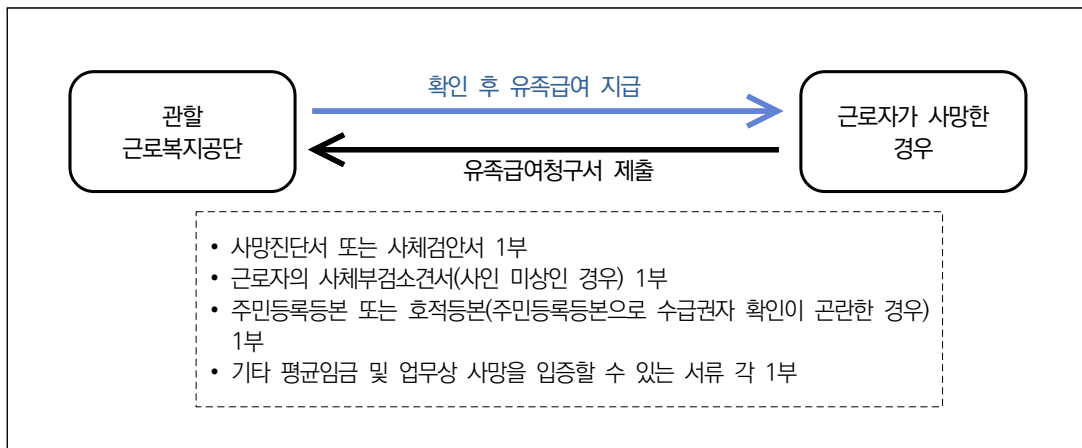
□ 유족급여

○ 유족급여 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는 사망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이익을 보상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이 있으며,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유족급여 지급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인 자녀, 손자녀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이상의 남편,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가짐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됨



□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 내용

-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휴업급여 산정 기준

-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출하고 진폐증 등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업무상질병 이환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함

4. 산재보상에 불복 시 이의신청

□ 근로복지 공단에 심사청구

- 최초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최초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그 상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설치된 산재심사실 심사 청구를 함
-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한 최초의 근로복지공단지사(이를 '원처분기관'이라고 부른다)를 통하여 제기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이를 '원처분기관'이라고 부른다)에 심사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서류를 접수한 최초 근로복지공단지사는 5일 이내에 자신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에 송부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4항)
- 심사청구는 최초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최초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공단본부는 이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공단은 1회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청구 결정 연장 가능
 - 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또 그 관계인을 지정한 장소로 출석하게 하여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심사청구와 관련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도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 불복시 재심사 청구 가능.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장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하게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 즉 최초 원처분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서 재심사청구서를 제출
 - 재심사청구는 앞서 설명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 공개가 원칙임이므로 신청한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참석할 수도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
 -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해서는 심리조서를 작성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
 - 신청당사자인 심사청구인이나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직접 수급권자인 때에는 산재법상의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 행정소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임
 - 재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은 최초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음

5. 타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책임과의 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은 면제됨
 -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청구는 할 수 없음

□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사업장 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그 책임이 면제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 재해로 인한 전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고 나서도 그 손해배상의 금액이 남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민법상 손해배상은 근로자 과실률과 사업주 과실률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조치가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사항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산재사고의 원인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과중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의 이익이 있지만, 사고의 경위상 근로자의 과실률이 상당하다면 산재보상을 제한 나머지 손해배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음.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그 발생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살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국민연금과의 관계

- 산재보상과 국민연금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한 장애급여, 동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 또는 근로기준법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 동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8조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근거: 국민연금법 제113조)

6. 산재발생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직접비(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사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 급여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 전액

□ 간접비

○ 인건비 손실액

- 병원후송조치, 병원방문시간에 소요된 손실액
- 작업을 중지한 종업원들에 의해 잃어버린 시간비용 - 작업중단으로 인한 생산손실액
- 행정 및 유관기관 조사 동행 손실액 - 원상복구를 위한 인건비
- 행정 및 유관기관 조사에 소요된 인건비 - 서류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인건비

○ 물적손실액

- 철거비용 : 장비, 잔재처리, 폐기물처리 - 재시공비용 : 자재비, 기타

○ 특수손실액

- 사법처리에 따른 벌금액
- 구속에 따른 변호사비용
- 교통비, 출장비 : 재해조사, 발주처방문, 본사방문 등
- 통신비, 복사비, 용지비 등 잡비
- 재해로 인한 소송진행 비용
- 재해로 인한 추후 정부 안전진단에 따른 준비비용(안전시설설치, 정리정돈 등에 소요된 비용)
- 산재보험료증가에 따른 손실비용
- 앰블런스 등 재해자 조치 시 차량대절에 따른 부속비용
- 2차 재해예방비용
- 대외활동비
- 의욕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회식비, 위로금 등

7. 산재휴직자의 급여 및 복직(연차 유급휴가 등)

□ 산재휴직자의 급여·해고 및 복직

-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만 하여도 무방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수행하는 업무상에 발병 원인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산되는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

- 요양종결 후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업 전에 담당하던 업무에 복직할 수 없는 정도라면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시켜야 함.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미한 작업이 없으므로 퇴직 처리에 대한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퇴직처리 검토 필요

□ 산재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제 근무를 하고, 이 역시 일정한 시간이 정해진 근무형태가 아닌 아이돌봄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와 같은 연차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산재휴직 및 이후 복귀에 있어서 연차운영은 어려운 문제임
- 원칙적으로 산재휴직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산업재해 휴직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 실제로 부여할 때는,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 및 주휴일)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산재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하되, 사업장 전체 대비 출근율에 비례한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함
 - 산재요양기간(3개월)을 제외한 기간(9개월)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주 40시간제 사업장으로써 1년 차인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전체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음

$10일 \times (9개월 / 12개월) = 7.5일 = 8일$

-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다음 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데, 출근율의 대상기간이 1월의 전부를 산재요양을 하였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다음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발생 여부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공통, '21년 기준)

본인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규정을 준수하고 아이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아이돌봄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규정 준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서식 및 증빙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제출하고, 관할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의 추가 자료요구 및 불시 현장방문·점검에 대해 동의하며 성실히 협조한다.
 - * 정부지원 결정에 따른 정부지원 시점은 정부지원 결정 처리 완료 시점으로 함
 - * 서류 제출이 늦어져 정부지원액이 감소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음
2. 정부지원 결정가구('가', '나', '다' 유형으로 소득판정을 받은 가구)의 경우 [행복e음 등록된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라' 유형 가구(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한다.
3.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정부지원 시간(영아종일제 월 60시간~200시간, 시간제 연 840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라' 유형 가구의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이용시간 제한 없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을 확인한다.
4. 서비스 유형(시간제 ↔ 종일제)을 변경할 경우, 정부지원시간 및 이용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정부지원시간 및 이용기간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한다.
 -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시는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5. 정부지원은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름
6.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종류·이용시간·아동 수·정부지원에 따른 이용비용, 납부절차, 이용자 에티켓, 기관 공지사항 등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용한다.
 - *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사항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7.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8.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월 단위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보미)이 계약하며 아이돌보미 면접(서비스 연계 시까지 월 최대 2회) 시 비용(1만2천원)은 이용가정이 부담한다.

9. 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이 원칙임을 확인하다.
10. 이용자는 서비스 시작전에 만19세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아이돌보미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연락하여 합의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반드시 만19세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 받아야 한다.
11. 서비스 연계 후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하며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부여된 가상계좌에 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12.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취소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 기관(업무시간 내)을 통하고,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취소수수료 10,040원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3.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9:00~18:00) 외 서비스 변경(시간연장)은 아이돌보미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합의로 변경 가능함을 확인한다.(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활동일지 작성 및 변경사항 보고)
14. 아이돌보미 활동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과 휴게시간 부여가 적용되며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가 상호 협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 돌보미가 연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5. 다음의 경우 정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영아종일제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 시간제 : 보육료 지원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9~16시) /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유치원 이용시간 (9~13시) / 이 외 주말·시간연장 등 실이용시간을 포함
- 아이돌보미 존중 및 돌봄 업무 협조
-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정부지원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하였으며 매년 보수교육 이수, 건강진단서 제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16.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친절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17.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및 갈등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최대 1년내 서비스 이용제한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하여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8.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이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이돌보미에게 위임하며 가정 내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한다.
19. 식사시간대에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식사는 미리 준비,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활동, 식사준비 등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 서비스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20.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CCTV, 웹캠, 녹음기 등) 설치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설치 사실과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한다.
21. 서비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도서벽지지역 거주 등)를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22. 친인척(아동기준 4촌이내)인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부정수급으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 해당 아이돌보미를 연계받았을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 변경하여야 한다.
23.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점검(불시가정방문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책임의 범위

24. 외출 시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동의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아이돌보미가 책임을 짐에 동의하며, 서비스제공기관 및 지원기관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책임지지 않음을 동의한다.
25.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을 아이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간에 해결한다.(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화재보험 및 아동의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함)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는 그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26. 아이돌봄서비스는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동일가정 내 형제·자매를 돌보게 할 수 있다. 단, 아동 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묻지 아니한다.
27.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서비스 제한 사유

① 1개월간 이용제한 사유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3건 이상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②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③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3회 이상

④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⑤ 기타

- 미납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8.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벌칙)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